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1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 강병원 · 이용선 · 김정호

맹성규 · 정춘숙 · 이정문

김민기 · 민병덕 · 박 정

이개호 · 이해식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 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 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 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 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 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인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지급기간의 특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출산전후 휴가 등을 신청할 당시 이 법 제76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2(지급기간의 특례)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
	법」 제74조에 따른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출산전후휴가 등
	을 신청할 당시 이 법 제76조
	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
	한다.